

## 우주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분쟁해결제도\*

### The Liability for Damage an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the Space Law

이강빈\*\*  
Kang-Bin Lee

#### 〈목 차〉

- I. 서론
- II. 우주조약상의 국제책임과 분쟁예방
- III. 우주손해책임조약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분쟁해결
- IV.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
- V. 우주법상 우주분쟁 해결제도의 개선방향
- VI. 결론

주제어 : 우주조약, 우주손해책임조약, 우주손해배상법, 국제책임, 분쟁예방, 손해배상책임, 분쟁해결

\* 이 논문은 한국중재학회 2010년도 하계 국제학술대회(2010. 7. 13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상지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I. 서론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UN의 결의에 따라 현재 5개의 국제조약 즉 1967년 우주조약 (Outer Space Treaty of 1967), 1968년 우주구조반환협정 (Rescue and Return of 1968), 1972년 우주손해책임조약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1976년 우주물체등록조약 (Registration Convention of 1976), 1979년 달 조약 (Moon Treaty of 1979) 등이 채택 발효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달 조약을 제외한 상기 4개 국제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한편 세계 각국들은 상기 우주 관련 국제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의 추진을 위하여 우주 관련 국내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국내입법으로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주활동과 같은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타방의 법익을 침해하여 인적 혹은 물적으로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상황이 존재하게 되며, 따라서 특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무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다.

우주활동 과정에서 특히 우주물체의 발사 또는 운용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각종의 손해 또는 위법행위의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태 즉 ① 발사 및 회수의 실패로 인한 지상의 인명 또는 재산 피해, ② 우주물체의 파편 또는 인공위성 자체의 추락, ③ 환경오염문제, ④ 우주공간에서의 타 물체와의 충돌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우주활동 전후단계의 어느 시점에서든 발생가능한 손해로 인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사후 법적 분쟁해결을 위하여 국가책임 관련 우주법제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국내적 규율을 위한 법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총 11기의 인공위성이 발사되었으며, 2007년 우주개발진흥계획에 의하면 2010년 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발사, 2020년 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2021년 달 탐사선 발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나로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우리나라는 세계 13번째의 우주센터 보유국이 되었으며, 2009년 8월에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 2호가 이곳에서 우리의 자력으로 처음 발사되었고, 이어 2010년 6월에 나로호가 2차 발사되었다. 비록 나로호의 두번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지만, 발사체 개발과 발사 기술에 있어 상당한 진보를 이루어 냈으며, 향후 우주개발사업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현재 우주개발사업은 국가, 국제기구 및 민간기업에 의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우주물체의 발사 및 운영과정에서 고도의 위험성으로 인해 물질·인적 손해와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효율적인 분쟁의 해결 및 손해배상을 위하여 우주관련 국제조약 및 국내입법상의 법제도를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으로 우주조약 및 우주책임조약상의 국가책임과 손해배상책임 그리고 분쟁예방과 분쟁해결제도를 고찰하고, 또한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제도를 고찰함과 더불어 우주분쟁 해결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 된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선이(2007)의 연구<sup>1)</sup>에서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제정경위, 주요내용, 손해배상보험, 각국의 우주사고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김두환(2009)의 연구<sup>2)</sup>에서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우주개발진흥법, 및 우주손해배상법의 주요내용과 논평, 우주정책의 장래 과제, 및 아시아 우주기구의 설립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상기 선행 연구들과 본 연구와의 차이점은 본 연구에서는 우주관련 국제조약과 우리나라 우주관련 국내입법가운데 주로 우주활동 관련 손해배상책임 및 분쟁해결제도에 관하여 고찰하고 있는 점이다.

## Ⅱ. 우주조약상의 국제책임과 분쟁예방

### 1. 국가의 국제책임 부담원칙

1967년 우주조약 (Outer Space Treaty of 1967)<sup>3)</sup> 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 주체가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의 비정부 주체의 활동은 본 조약의 관계 당사국에 의한 인증과 계속적인 감독을 요한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국제기구가 활동을 행한 경우에는, 본 조약에 의한 책임을 동 국제기구와 이 기구에 가입하고 있는 본 조약의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4)</sup>

- 1) 김선이, “우주손해배상법에 관한 약간의 고찰”,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2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7. 12.
- 2) 김두환, “한국에 있어 우주법의 주요내용, 논평과 장래의 과제”,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4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9. 12.
- 3) 우주조약의 원명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통제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이며, 이 조약은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특별위원회”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에서 기초하여 UN 총회에서 1966년 12월 19일 채택되고 1967년 1월 27일 서명하여 동년 10월 13일 공포·발효되었다.

우주조약 제6조는 우주에서 수행된 활동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는 일반원칙과 더불어 비정부 주체 즉 사적인 주체가 행한 활동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이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기구가 행한 우주활동에 대해 국제기구와 그 기구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함을 규정하고 있다.

우주활동을 행하는 실제의 주체가 정부기관이든 사기업 기타의 비정부 주체이든 그 지위여하에 관계없이 국가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책임의 집중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기업 기타 비정부 주체가 우주활동을 행하려면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의 인증 및 계속적인감독을 요한다.

국가는 적절한 관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적인 주체의 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으로부터 면제를 주장할 수 없는 바, 이는 국제책임에 있어서 사적인 주체의 우주활동도 국가의 활동과 동등하게 취급됨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는 사기업이 우주조약의 규정에 따라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조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국제적 책임을 지며 이러한 사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조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이 국가에 직접 귀속된다.<sup>5)</sup>

여기서 국제기구라 함은 국가가 회원국으로 있는 정부 간 국제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만일 정부 간 국제기구가 아닌 기구에 의한 우주활동의 경우는 관련 국가의 허가와 통제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손해도 관련 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sup>6)</sup>

## 2.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원칙

우주조약에 의하면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대기권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국제적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7)</sup>

이 조항은 우주조약 제6조의 국가의 국제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발사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우주조약상의 국가의 국제적 책임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1972년 책임조약 (Liability Convention)이 채택되었다.

4) 우주조약 제6조.

5) 이영진·김두환·조홍제, “우주법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방향 연구”, 외교통상부 용역과제, 2008. 9. 30, p.98.

6) 김한택, 「항공우주법」, 지인북스, 2007, p.100.

7) 우주조약 제7조

여기서 손해의 발생장소는 지상, 대기권,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이며, 지상에 있어서의 손해는 사람 및 재산에 관한 손해를 의미하며, 대기권에 있어서의 손해는 주로 통상의 항공기에 대한 손해를 의미하며,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 공간에 있어서의 손해는 다른 조약당사국의 우주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장소에 있어서 우주물체의 상승, 비행, 강하, 착륙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손해가 우주조약 제7조의 주된 적용대상이 된다.<sup>8)</sup>

### 3. 국가의 분쟁 예방적 조치 및 국제적 협의

우주조약에 의하면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서 본 조약의 당사국은 협력과 상호 원조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의 상응한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에 있어서의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조약의 당사국은 유해한 오염을 회피하고 또한 지구 밖 외계물질의 도입으로부터 야기되는 지구 주변에 불리한 변화를 가져 오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달과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의 연구를 수행하고, 이들의 탐사를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만약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에서 국가 또는 그 국민이 계획한 활동 또는 실험이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있어서 다른 당사국의 활동에 잠재적으로 유해한 방해로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본 조약의 당사국은 이러한 활동과 실험을 행하기 전에 적절한 국제적 협의를 가져야 한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에서 다른 당사국이 계획한 활동 또는 실험이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잠재적으로 유해한 방해로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본 조약의 당사국은 동 활동 또는 실험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9)</sup>

이 조항은 예방적 성격의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분쟁을 해결하기 보다 예방한다는 의미에서, 조약 당사국이 달과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서 유해한 오염을 회피하고 지구 주변에 불리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이 목적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며, 또한 다른 당사국의 활동에 잠재적으로 유해한 방해로 초래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적절한 협의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8) 이영진 외 2인, 전제 보고서, p.99.

9) 우주조약 제9조.

#### 4. 국제적 정부 간 기구의 실제적 문제의 공동해결

우주조약에 의하면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서 국제적 정부 간 기구가 행한 활동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모든 실제적 문제는 본 조약의 당사국이 적절한 국제기구나 또는 본 조약의 당사국인 동 국제기구의 1 또는 2 이상의 회원국가와 함께 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0)</sup>

이 조항은 국제적 정부 간 기구의 활동과 관련하여 실제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분쟁을 해결할 국가의 책임을 국제적 정부 간 기구에도 지우고 있다. 국제적 정부 간 기구들이 우주활동에 참여하고 국가들이 그 활동으로 야기된 실제적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국가들은 당해 기구 또는 그 기구의 가맹국들과 함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법에 의뢰하지 않고 외교적 교섭을 통한 전통적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1)</sup>

### Ⅲ. 우주손해책임조약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분쟁해결

#### 1. 발사국의 책임원칙

##### (1) 발사국의 절대적 책임

1972년 우주손해책임조약 (Liability Convention of 1972)<sup>12)</sup>에 의하면 “자국의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 중에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3)</sup>

여기서 손해(damage)라 함은 인명의 손실, 인체의 상해 또는 기타 건강의 손실 또는 국가나 개인의 재산, 자연인이나 법인의 재산 또는 정부 간 국제기구의 재산의 손실 또는 손해를 말한다.<sup>14)</sup>

책임조약에서 의도하는 손해는 직접적인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간접적인 손해는

10) 우주조약 제13조 후단.

11) 이영진 외 2인, 전제 보고서, p.102.

12) 우주조약의 원명은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조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이며, 이 조약은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특별위원회”(COPUOS)에서 초안이 작성되고 UN 총회에서 1971년 11월 29일 평화되고 1972년 9월 1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 1월 14일 공포·발효되었다.

13) 우주손해책임조약 제2조.

14) 우주손해책임조약 제1조 (a).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예비토의에서 몇몇 대표들은 간접적인 손해는 실무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sup>15)</sup>

책임조약에서 우주물체의 발사국에 절대적 책임 (absolute liability)을 지우고 있는 것은 우주활동이 고도의 위험을 내포하는 초 위험적 행위로서 손해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렵고 우주활동에 의해 이익을 얻는 발사국이 당해 활동에 관한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위험책임주의’의 사고로부터 나온 것이다.<sup>16)</sup>

절대책임제도에 의하면 국가는 여하한 상황 하에서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경우조차도 책임을 져야 한다.<sup>17)</sup> 한편 책임조약에 의하면 발사국 측의 절대책임의 면제는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 하에 행하여진 청구국 또는 청구국을 대표하는 자연인 및 법인 측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중대한 부작위로 인하여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발사국이 입증하는 한도까지 인정된다. 특히 유엔헌장 및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에 의하여 행하여진 활동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면책도 인정하지 않는다.<sup>18)</sup>

또한 책임조약에 의하면 이 협약의 규정은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① 발사국의 국민에 대한 손해, ② 발사시 또는 발사시 이후 어느 시기로부터 하강할 때까지의 단계에서 그 우주물체의 작동에 참여하는 동안 또는 발사국의 초청을 받아 발사 또는 회수 예정지역의 인접지에 있는 동안의 외국인에 대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sup>19)</sup>

이는 결과적으로 발사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내·외국인에 대한 피해는 동 업체의 등록국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발사국은 자국민에 대한 피해를 국내법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sup>20)</sup>

## (2) 발사국의 과실 책임

책임조약에 의하면 “지구 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발사국의 우주물체 또는 동 우주물체상의 인체 또는 재산이 타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후자는 손해가 후자의 과실 또는 후자가 책임져야 할 사람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21)</sup>

이와 같이 우주물체의 발사 후 지구표면 이외의 지역 즉 대기권이나 우주공간 또는 천

15) I. H. Ph. Diederiks-Verschoor and V.Kopal, *An Introduction to Space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8, p.139.

16) 홍순길·신홍관·김종복, 「신국제항공우주법」, 항공대학교 출판부, 2006, p.279.

17) I. H. Ph. Diederiks-Verschoor and V.Kopal, *op.cit.*, p.37.

18) 우주손해책임조약 제6조.

19) 우주손해책임조약 제7조.

20) 박원화, 「우주법」, 명지출판사, 2009, p.91.

21) 우주손해책임조약 제3조.

체에서 우주물체 상호간에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우주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간의 관계로서 전술한 발사국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경우와는 달리 위험부담에 있어서 특별한 취급을 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발사국에 과실책임을 지우고 있다.<sup>22)</sup>

### (3) 발사국의 연대책임

책임조약에 의하면 2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공동으로 우주물체를 발사할 때에는 그들은 발사한 손해에 대하여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책임을 진다.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한 바 있는 발사국은 공동발사의 타 참가국에 대하여 구상권을 보유한다. 우주물체가 발사된 지역 또는 시설의 소속국은 공동 발사의 참가국으로 간주된다.<sup>23)</sup>

예를 들면, 우주기술이 미약한 어느 국가가 자국의 사막화 추이를 관찰할 목적으로 인공위성 발사를 계획하면서 인공위성 제조를 한국 기업에, 발사체 제조를 러시아 기업에, 실제 발사를 프랑스의 기아나 우주센터에 맡길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인공위성 1기 발사에 4개 국가가 참가하게 된다. 만약 발사체 비행 중 폭발 및 추락으로 해당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또는 인공위성의 성공적인 궤도 진입 후 발사체의 파편이 지상으로 추락하여 다른 국가에 손해를 주었을 때, 발사에 참가한 4개국 중 어느 국가가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sup>24)</sup>

여기서 발사국 이외에 예컨대 발사에 대해 기술이나 과학과 그 밖의 제공을 간접적으로 행한 국가에 대해서는 동일한 정도의 책임이 지워진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배상청구는 이러한 국가에 대해서는 행해지지 않고 발사국에 집중한다.<sup>25)</sup>

## 2. 발사국에 대한 배상청구

### (1) 배상청구권자

책임조약에 의하면 손해를 입은 국가 또는 자연인 또는 자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손해를 입은 국가는 발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를 입은 국민의 국적국이 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타 국가는 어느 자연인 또는 법인이 자국의 영역내에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발사국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의 국적 또는 손해 발생 지역국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거나 또는 청구의사를 통고하지 않을 경우 제3국은 자국의 영주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발사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sup>26)</sup>

22) 이영진 외 2인, 전계 보고서, p.105.

23) 우주손해책임조약 제5조.

24) 정영진, "우주 분쟁법 연구 박차클", 동아일보, 2009. 10. 22.

25) 이영진 외 2인, 전계 보고서, p.110.

26) 우주손해책임조약 제8조.



이러한 규정은 동일지역 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한 구제를 인정해 주려는 의도에서 국적국 이외에 손해발생지역의 국가와 영주민의 거주국가에게도 보충적으로 배상청구권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해 주고 있다.<sup>27)</sup>

## (2) 배상청구방법

책임조약에 의하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발사국에 제시되어야 한다. 당해 발사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국가는 제3국에 대하여 발사국에 요청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청구국과 발사국이 공히 UN의 회원국일 경우 청구국은 UN 사무총장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다.<sup>28)</sup>

## (3) 배상청구기한

책임조약에 의하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손해의 발생일 또는 책임져야 할 발사국이 확인한 일자이후 1년 이내에 발사국에 제시될 수 있다. 만일 손해의 발생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책임져야 할 발사국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전기 사실을 알았던 이후 1년 이내에 청구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태만하지 않았다면 알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날로부터 1년을 어느 경우에도 초과할 수 없다. 위의 기한은 손해의 전체가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청구국은 청구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한의 만료 이후라도 손해의 전체가 밝혀진 이후 1년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sup>29)</sup>

## (4) 배상청구와 국내적 구제

책임조약에 의하면 이 협약에 의거 발사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제시는 청구국 또는 청구국이 대표하고 있는 자연인 및 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 사전 어떠한 국내적 구제의 완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협약상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또는 그 국가가 대표하고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발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 또는 기관에 배상청구를 발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 또는 기관에 제기되어 있거나 또는 관련 국가를 기속하고 있는 타 국제협정에 의거 제기되어 있는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는 이 협약에 의거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sup>30)</sup>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피해자가 국제적 청구를 하기 전에 가해국가의 국내적 구제절차를

27) 이영진 외 2인, 전제 보고서, p.112.

28) 우주손해책임조약 제9조.

29) 우주손해책임조약 제10조.

30) 우주손해책임조약 제11조.

완료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나,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31)</sup>

### 3. 발사국의 손해배상액

책임조약에 의하면 발사국이 이 협약에 의거 책임지고 지불해야 할 손해에 대한 배상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상태대로 자연인, 법인,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입은 손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국제법 및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sup>32)</sup>

이와 같이 발사국의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으로 원상회복의 정신에 의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상태의 회복을 가져오도록 배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78년 1월 발생한 구소련의 Cosmos 954호가 캐나다 영토에 추락한 사건에 있어서 캐나다 정부가 청구한 배상금액은 총 6,026,083.56 캐나다 달러이며, 이 금액은 동위성이 캐나다 영토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야기되지 않았을 상태의 회복에 준한 것이었다. 결국 캐나다와 구소련은 3년간의 교섭을 거쳐 1981년 4월 Cosmos 954호로 인한 손해에 대한 캐나다의 배상청구 해결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여 구소련은 3백만 캐나다 달러를 지급하고 캐나다는 이를 수락하여 배상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였다.<sup>33)</sup>

### 4. 청구위원회의 설치

책임조약에 의하면 청구국이 청구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발사국에 통고한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교적 교섭을 통하여 보상 청구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련 당사국은 어느 일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청구위원회 (Claims Commission)를 설치한다.<sup>34)</sup> 청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된다. 청구국과 발사국이 각각 1명씩 임명하며, 의장이 되는 제3의 1인은 당사국에 의하여 공동으로 선정된다. 각 당사국은 청구위원회 설치 요구 2개월 이내에 각기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위원회 설치 요구 4개월 이내에 의장 선정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어느 일당사국은 UN 사무총장에게 2개월의 추천 기간 내에 의장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sup>35)</sup>

청구위원회는 배상 청구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고 타당할 경우, 지불하여야 할 배상액

31) 이영진 외 2인, 전개 보고서, p.113.

32) 우주손해책임조약 제12조.

33)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XVIII, No. 4, July 1979, May 1981; 이영진 외 2인, 전개 보고서, pp.112, 115, 116.

34) 우주손해책임조약 제14조.

35) 우주손해책임조약 제15조.

을 확정한다.<sup>36)</sup> 청구위원회의 결정은 당사국이 동의한 경우 최종적이며 기속력이 있다. 당사국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청구위원회는 그 결정 또는 판정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청구위원회가 결정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청구위원회는 가능한 신속히 그리고 청구위원회 설치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판정을 내려야 한다.<sup>37)</sup>

당사국이 청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종의 중재재판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sup>38)</sup>

## 5. Iridium 33과 Cosmos 2251 위성 충돌사건에서 책임문제 분석

### (1) 문제의 제기

최근에 우주공간에서 우주물체 상호 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발사국의 과실책임 관련 분쟁사건을 보면, 2009년 2월 10일 시베리아 북부 약 800km 상공에서 활동 중인 미국의 상업통신위성 Iridium 33과 기능이 소멸된 러시아 통신위성 Cosmos 2251 간에 선례가 없는 충돌이 발생하였다.

양 위성의 충돌 당시 미국과 러시아 모두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책임조약의 당사국이며, 동 조약상의 발사국 지위에 있었으므로,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양 위성 충돌은 1972년 책임조약 제3조에 의거하여 발사국은 손해가 그의 과실 또는 책임져야 할 사람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입증부담은 손해를 입어 배상을 청구하는 국가가 상대방 측의 과실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 있어서 과실(fault)은 부주의(negligence)와 같은 것이며, 부주의는 주의의무를 근거로 하여 결정된다.

Iridium-Cosmos 충돌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① 누가 어떠한 의무가 있는가, ② 기능이 소멸된 위성을 궤도비행토록 남겨둔 것이 과실행위인가 여부, ③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가, ④ 누가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등이다.<sup>39)</sup>

### (2) 러시아 측의 과실문제

러시아는 Cosmos 2251가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폐기하였다. 결코 위성을 궤

36) 우주손해책임조약 제18조.

37) 우주손해책임조약 제19조.

38) 이영진 외 2인, 전계 보고서, p.115.

39) Ram Jakhu, "Question of Liability in Cosmos 2251 and Iridium 33 Collision in Space", 「2009년도 제43회 국제항공우주법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9. 10. 16, pp.169-172.

도비행으로부터 제거할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그것은 다른 국가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용되었거나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위가 우주조약 제9조에 의거하여 러시아의 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미국은 러시아 측의 이러한 부주의가 러시아의 과실에 해당한다는 것과 러시아는 미국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Iridium 위성의 파괴에 대하여 미국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주시대의 새벽 이래 모든 발사국들은 그들의 기능이 소멸된 위성을 폐기하여 왔다는 것을 다룰 수 있다. 지난 50년 이상 어떠한 국가도 이러한 상례적인 관행에 심각하게 반대해 오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한 국가의 관행이 우주조약 제9조에 의거한 한 국가의 일반적 의무를 변경하거나 명확히 하는 것을 발전시켜 왔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기능이 소멸된 Cosmos 위성을 남겨 둔 것에 대하여 부주의나 과실이 없으며 그리고 Iridium 33의 파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미국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주의(기여적 부주의)가 있었다.<sup>40)</sup>

### (3) 미국 측의 과실문제

미국과 러시아는 모두 Iridium 33에 대한 발사국이었다. 이것은 미국이 이 사건에서 그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책임협약은 특별히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

우주조약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면, 만약 러시아가 미국 측의 과실을 입증한다면 러시아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미국은 Iridium 33을 UN에 등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미국은 1976년 등록조약상 그의 의무의 위반이다. 더욱이 비등록은 Iridium 33에 대한 관할과 통제를 행사하는 국가에 대하여 미국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Iridium 회사는 충돌에 대하여 사전 경고를 받지 못했으며, 그러므로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설립한 미국의 우주감시망은 Iridium 33을 감시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Cosmos 2251과 그의 충돌 가능성을 예언하지 못하였으며, 그리고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의 궤도비행을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적 행동을 취하도록 Iridium 관리자 측에게 지시하지 못하였다.

미국의 우주기술문제의 전문가인 Mark Gubrud에 의하면, 논리적으로 예언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 행동을 취할 책임은 적의 중인 위성 즉 Iridium 33의 소유자에게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그의 부주의와 부작위로 인한 과실이 있다. 미국

40) Ram Jakhu, *op.cit.*, p.174.

과 그의 회사는 그 자신의 과실로 손실을 입었다. 만약 미국이 이 사건에서 과실이 있다면, 러시아는 Cosmos 2251의 파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는가? 이를 위하여 러시아는 미국 측의 과실뿐만 아니라 입은 손해의 양을 입증하여야 한다.<sup>41)</sup>

#### (4) 소결

Iridium-Cosmos 충돌사건은 미국과 러시아 상호 간의 이해에 의하여 해결된 것같이 보인다, 그것은 어느 측의 과실을 입증하거나 또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우주공간은 불변지게 될 것이고, Iridium-Cosmos 충돌과 같은 사고들이 우주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다, Iridium-Cosmos 충돌은 안전기준, 우주교통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술적 및 규정적 해결 모두의 긴급한 요구를 두드러지게 하였다. 국제적 우주 안전 및 교통관리규정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하여 협상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의 이행은 사실의 공평하고 정확한 진술과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들 단체에 의하여 감시되어야 할 것이다.<sup>42)</sup>

## IV.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

### 1. 우주손해의 정의

우주손해배상법<sup>43)</sup>의 목적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sup>44)</sup>

이 법에서 “우주손해란 우주물체의 발사·운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의 사망·부상 및 건강의 손상과 같은 인적 손해와 재산의 파괴·훼손·망실과 같은 물적 손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sup>45)</sup>

이는 우주손해배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우주손해를 “제3자의 손해”로 한정함으로써 우주물체 발사를 위한 내부자들의 손해에는 동 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주물체 발사를 위한 탑재체 관리자와 발사체 발사자 및 부품 등 공급자들 간에는 대개 일정한 계약관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이들 간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채무

41) Ram Jakhu, *op.cit.*, p.175.

42) Ram Jakhu, *op.cit.*, pp.176, 178.

43) 우주손해배상법은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14호로 제정 공포되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44) 우주손해배상법 제1조.

45) 우주손해배상법 제2조제4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경합하게 되므로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sup>46)</sup>

한편 동 조항은 우주손해를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로 구분하고 있는 바,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직접 손해에 한정하는 것으로 간접손해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sup>47)</sup>

## 2. 우주손해배상법과 국제조약과의 관계

우주손해배상법에 의하면 정부는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정부가 외국정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sup>48)</sup>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입은 우주손해의 배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sup>49)</sup>

이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우주사고로 인하여 타국가의 인명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타국가가 동일한 조건에서 우리 국민이나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때 동일하게 배제하거나 제한하도록 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sup>50)</sup>

## 3.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원칙

### (1) 발사자의 무과실책임

우주손해배상법에 의하면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우주물체 발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가 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우주손해와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우주손해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sup>51)</sup>

이는 우주기술 분야의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한 피해자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주개발사업의 고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우주물체 발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sup>52)</sup>

한편 국가 간 무력충돌과 같은 비 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

46) 김선이, 전계 논문, pp.5-6.

47) 김선이, 전계 논문, p.6.

48) 우주손해배상법 제3조제1항.

49) 우주손해배상법 제3조제2항.

50) 김선이, 전계 논문, p.7.

51) 우주손해배상법 제4조제1항.

52) 김선이, 전계 논문, p.7.

에 발사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므로 무과실책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손해는 전문성 면에서 상호 대등한 지위에 있는 자들 간에 발생한 손해라는 점에서 무과실책임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과실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sup>53)</sup>

## (2) 발사자의 책임의 집중 및 구상

우주손해배상법에 의하면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긴 우주손해를 배상한 우주물체 발사자는 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우주물체 발사 등에 제공될 자재의 공급이나 역무(노무를 포함)의 제공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해당 자재의 공급이나 역무를 제공한 자나 그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sup>54)</sup>

이는 우주개발사업의 낮은 상업성과 함께 우주물체 발사자와 자재나 역무 제공자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고려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즉 경과실의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sup>55)</sup>

## (3)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배제

우주손해배상법에 의하면 우주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sup>56)</sup> 이는 우주물체와 그 부품이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품공급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상업성이 낮은 우주개발사업의 속성상 이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은 우주개발사업의 속성상 이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와 우주개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sup>57)</sup>

## 4. 발사자의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우주손해배상법에 의하면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한도는 2천억원으로 한다.<sup>58)</sup>

이는 우주개발사업이 고비용과 고위험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우주사고의 속성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규모가 방대하므로 손해전액을 배상하게 할 경우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

53) 김선이, 전계 논문, p.8.

54) 우주손해배상법 제4조제2항.

55) 김선이, 전계 논문, p.8.

56) 우주손해배상법 제4조제3항.

57) 김선이, 전계 논문, p.9.

58)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우주개발사업의 발전에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규정이다. 또한 우주손해에 대한 발사자의 무과실책임에 대응하여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설정하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도 볼 수 있다.<sup>59)</sup>

## 5. 발사자의 책임보험의 가입

우주손해배상법에 의하면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가입하여야 할 보험금액은 이 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우주물체의 특성, 기술의 난이도, 발사장 주변 여건 및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다.<sup>60)</sup>

이 조항은 우주개발진흥법 제15조(6)와 동일한 내용인 책임보험의 의무가입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책임보험에 가입 의무자를 우주발사체의 발사자로 한정하고 탑재체 관리자에게는 가입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우주발사체 발사자의 행위 종료이후 탑재체인 인공위성이 궤도를 비행하는 과정에서는 손해 발생의 확률이 높지 않으므로 탑재체 관리자에게 책임보험에 가입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sup>62)</sup>

## 6.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의 조치 및 지원

우주손해배상법에 의하면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제6조제2항의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가 전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한다.<sup>63)</sup>

이러한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정부의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와 손해배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일정 범위 안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업성이 낮은 우주개발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손해

59) 김선이, 전계 논문, p.10.

60) 우주손해배상법 제6조.

61) 우주개발진흥법 제15조 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우주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최소배상한도액은 국내·외 보험시장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62) 김선이, 전계 논문, p.11.

63) 우주손해배상법 제7조.



배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64)</sup>

## 7.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우주손해배상법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하지 못한다.<sup>65)</sup>

이 조항에서 우주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주손해책임조약 제10조제1항에 손해에 대한 보상청구는 손해의 발생일 또는 책임져야 할 발사국이 확인한 일자이후 1년 이내에 발사국에 제시될 수 있다는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다.

## V. 우주법상 우주분쟁 해결제도의 개선방향

### 1. 우주손해책임조약의 개선방향

#### (1) 손해배상청구 제기권자 문제

우주손해책임조약 제8조제1항은 손해를 입은 국가 또는 자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손해를 입은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조약 제22조제1항은 국가에 대해 언급된 사항은 우주활동을 수행하는 어느 정부 간 국제기구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손해를 입은 국제기구인가 아니면 그 국제기구가 위치하고 있는 국가인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바,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2) 배상청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 문제

우주손해책임조약 제14조에 의하면 외교적 교섭을 통해 배상청구가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청구위원회가 구성된다. 한편 동 조약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청구위원회의 결정은 당사국이 동의한 경우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국이 동

64) 김선이, 전계 논문, p.12.

65) 우주손해배상법 제8조.

의한 경우라는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종국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sup>66)</sup>

## 2.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방향

### (1) 우주손해의 정의에 간접손해 포함

우주손해배상법 제4호제4호는 우주손해의 정의에서 우주손해를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로 구분하고 있는 바, 이는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를 모두 직접 손해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물체의 발사·운용 등으로 발생된 손해의 배상범위를 직접 손해에 한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구제에 충실하기 위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간접 손해 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와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간접 손해도 가해자의 행위추세와 부정이트추세공평 부합하의 분담이라는 불법행위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배상의 범위에 간접 손해를 포함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sup>67)</sup>

### (2) 손해배상 책임한도액의 통화단위 변경

우주손해배상책임법 제5조는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 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를 2천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상법 제770조 및 제797조 그리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 국제통화기금 (IMF)의 통화단위인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 SDR)을 계산단위로 도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주손해배상법상의 책임한도액 통화단위를 '계산단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sup>68)</sup>

### (3) 우주물체 공동 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신설

우주손해책임조약 제52조는 2개 이상 국가가 공동으로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경우의 손해에 대한 연대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우주손해배상법에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경우 이들 개인 또는 법인이 우주물체의 발사·운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공동 발사에 참가한 다른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sup>69)</sup>

66) 문준조·김선이, 「현대우주법론」, 한국법제연구원, 2009. p.166.

67) 김선이, 전제 논문, p.6.

68) 이영진 외 2인, 전제 보고서, p.179.

#### (4)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우주손해배상법상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 우주물체 발사자와 피해자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와 같은 분쟁 조정 기관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sup>70)</sup>

### 3. 국제법협회의 우주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 초안의 채택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 ILA)는 1978년에 우주법 분쟁의 해결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여 1998년 타이페이 회의에서 “우주활동에 관련된 분쟁의 해결에 관한 개정협약의 최종 초안”(The 1998 Final Draft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Related to Space Activities)을 채택하였다.<sup>71)</sup>

동 협약 초안은 우주활동에 관련된 분쟁의 비구속적 및 구속적 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비구속적 해결절차는 협상이나 기타 분쟁해결의 평화적 수단 또는 화해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교환하고 갈등을 해소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sup>72)</sup>

둘째, 구속적 해결절차는 비구속적 해결절차에 대한 호소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수단 즉 ① 국제우주법재판소가 설치될 경우 그러한 재판소, ② 국제사법재판소(ICJ), ③ 동 협약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중재재판소 중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없이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73)</sup>

동 협약 초안은 중재재판소와 국제우주법재판소의 절차에 관하여 광범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sup>74)</sup> 절차의 선택은 당사자가 협약 최종 초안에 서명하거나 비준하거나 가입할 때 3가지 강제절차(국제우주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중재재판소)중에서 서면으로 선택 선언할 수 있으며, 유효한 선언에 포함되지 않는 분쟁에 관련 당사자는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75)</sup>

동 협약 초안상의 관할권을 가지는 법정이나 재판소에 의한 결정은 모든 분쟁당사자들에게 최종적이고 구속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76)</sup>

69) 이영진 외 2인, 진계 보고서, p.180.

70) 이영진 외 2인, 진계 보고서, p.55.

71) ILA Report of the 68th Conference, Taipei, Republic of China, 1998, pp.249-267; Gardine Meishan Goh, *Dispute Settlement in International Space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7, p.67.

72) Taipei Final Draft Convention, Article 4; Gardine Meishan Goh, *op.cit.*, p.68.

73) Taipei Final Draft Convention, Article 6 (1); Gardine Meishan Goh, *op.cit.*, p.68.

74) Taipei Final Draft Convention, Section V relates to the arbitration procedure, Section VI relates to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Space Law; Gardine Meishan Goh, *op.cit.*, p.68.

75) Taipei Final Draft Convention, Article 6 (2); Gardine Meishan Goh, *op.cit.*, p.68.

76) Taipei Final Draft Convention, Article 13 (1); Gardine Meishan Goh, *op.cit.*, p.69.

국제법협회의 우주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 최종 초안은 우주활동 관련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혁신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모델로서, 실행 가능한 분쟁해결의 틀을 세우는데 상당한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sup>77)</sup>

#### 4. 우주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의 이용 및 개선

현대 우주부문에서 더욱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은 명백하며, 이러한 효율성의 전제조건은 그 제도가 공적 및 사적 모두의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중재는 우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해결의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서 활기차게 논의되어 왔다. 우주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중재의 강점은 다음과 같이 명백하다. 첫째, 중재는 최종적이고 구속력있는 결정을 가져온다. 둘째, 중재판정의 국제적 승인이 있다. 셋째, 중재판정은 중립적 절차이다. 넷째, 중재는 중재인들의 전문적 능력을 이용한다. 다섯째, 중재는 신속성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섯째, 중재는 비밀성을 유지한다.<sup>78)</sup>

이미 국제사업에 있어서 사적 기업들 간에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에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므로, 우주부문에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 전혀 새로운 분쟁해결제도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록 국제상사중재규칙과 절차가 우주 관련 분쟁 해결에 원칙적으로 적당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들은 이러한 우주분쟁 영역에 더욱 적합하도록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약간의 중재기관들이 우주활동과 우주법에 미숙하기 때문에 우주 관련 분쟁에서 성공적이지 못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주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 명단에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이 유용할 것이다.

한편 몇가지 종류의 우주에 특화된 중재규칙들이 요구될 수 있을 것이다. 우주법 분야에서 소송사건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에 논증이 잘된 선례를 제공하는 것은 주로 중재판정이다.

중재는 이미 우주사업을 포함한 국제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국가가 관련된 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인 것이다. 따라서 우주부문에서 사적 당사자들 간 분쟁 뿐 만 아니라, 국가 대 국가 간 분쟁 또는 국가 대 국제기구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와 같은 효율적이고 강제력있는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975년 유럽우주기구협약(European Space Agency Convention)은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법정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바, 동 협약 제17조에는 “유럽우주기구협약이나 그

77) Gerardine Meishan Goh, *op.cit.*, p.69.

78) Gerardine Meishan Goh, *op.cit.*, pp.116-117.

부속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둘 내지 그 이상의 당사국 사이 또는 그들과 본 기구 사이의 분쟁은 이사회에 의하거나 이사회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 분쟁의 어떤 당사자의 청구로도 중재에 회부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절차는 유럽우주기구협약 제17조의 규정 또는 유럽우주기구 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추가규칙에 의거해야 한다. 이러한 보충적인 규칙들은 상세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적용절차, 중재법정의 설치방법, 제출서류 등을 명확히 하고 있다.<sup>79)</sup>

이와 관련하여 유럽우주기구협약 제17조는 또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하고 있다.<sup>80)</sup> 중재법정은 3인으로 구성된다. 우선 각 당사자가 1인씩 추천하고, 위원장이 되는 나머지 1인은 먼저 추천받은 2인의 중재위원이 추천한다. 여타의 회원국 또는 동 기구는 그 사건의 결정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법정의 동의하에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 동 중재법정은 소재지를 정하고 자신의 절차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 동 중재법정의 다수결에 의한 판정은 당사자들에게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으며, 항소하지 못한다. 분쟁 당사자는 지체없이 그 판정에 따라야 한다.

유럽우주기구협약 부속서 I 제25조는 유럽우주기구로 하여금 서면계약을 체결할 때 중재를 규정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것은 중재조항에 적용법률, 중재인들이 앉을 국가 그리고 중재절차가 해당국가의 그것이어야 할 것을 진술하는 것이다. 중재판정은 판정이 이행될 영역 내의 국가에서 강제력있는 규칙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유럽우주기구 계약들을 위한 일반조항 및 조건들은 표준중재조항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sup>81)</sup>

한편 국제법협회가 채택한 1998년 “우주활동에 관련된 분쟁의 해결에 관한 개정 협약의 최종 초안” 제5장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sup>82)</sup>

분쟁당사자는 분쟁이 타방 당사자들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이 협약에 규정한 중재절차에 그 분쟁을 부탁할 수 있다. 통지는 청구취지와 그 근거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재재판소는 5인으로 구성하며, 절차를 개시하려는 당사자는 소정의 중재인 명부에서 우선적으로 선택된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이 중재인은 자국민으로 할 수도 있다.

분쟁의 타방 당사자는 제24조에 규정된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인 명부에서 우선적으로 선택된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이 중재인은 자국민으로 할 수도 있다.

나머지 3인의 중재인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명한다. 그들은 중재인 명부에서 우선적으로 선정되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분쟁 당사자들은 그 3인의 중재인 중에서 중재재판소의 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79)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rbitration in Air, Space and Telecommunications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2, p.149.

80) 이영진 외 2인, 전계 보고서, p.129.

81)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op.cit.*, p.150.

82) 이영진 외 2인, 전계 보고서, pp.146-148.

중재절차는 분쟁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재판소는 당사자들에게 참석하여 발언할 모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자체의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중재인의 다수결에 의하여야 한다.

중재재판소의 판정은 분쟁의 주된 문제에 국한되며, 판정의 토대가 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에는 여기에 참여한 중재인의 성명 및 판정일자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재판정은 미리 항소절차에 합의하지 않는 한, 이를 항소하지 못하며 최종적인 것이 되며 당사자를 구속함으로써 분쟁 당사자들은 그 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 VI. 결 론

최근 우주과학 기술의 발달과 우주개발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국가,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차원의 우주활동은 더욱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우주활동을 위한 우주물체의 발사·운영과정에서 항상 고도의 위험성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우주활동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손해에 대한 배상과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미리 구축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우주활동관련 분쟁사건으로서, 2009년 2월 10일 시베리아 타이미르 반도 약 800km 상공에서 미국의 상업통신위성 Iridium 33과 기능이 소멸된 러시아 통신위성 Cosmos 2251이 충돌하였으며, 충돌로 발생한 파편은 우주에서 기능중인 제3국의 인공위성과 제2차 충돌 가능성이 있어 분쟁이 연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법적 구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주활동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및 분쟁해결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우주손해책임조약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내입법으로는 우주손해배상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우주관련 국제조약 가운데 특히 우주손해책임조약은 우주분쟁 해결에 있어서 가장 정교한 규정을 가진 조약이지만, 손해배상을 위한 청구위원회의 결정은 당사국이 동의한 경우에만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당사국의 동의가 없더라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우주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속적인 우주분쟁 해결기구의 창설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상업적 우주활동과 비정부기구 및 기업의 우주개발에 적극적 참여 등으로 인한 우주활동의 복잡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증가하는 우주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효율적인 우주분쟁 해결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해양법재판소와 유사한 우주법재판소 및 우주법중재재판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sup>83)</sup>

한편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도 우주손해배상책임과 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바, 우주사고로 인한 제3자의 간접 손해에 대하여도 우주물체 발사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또한 우주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총 11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고,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및 2010년 6월 각각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두차례 발사함으로써 본격적인 우주활동국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가 나로 우주센터의 발사장에서 우주물체를 발사하고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지상, 해상 및 비행안전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은 바, 특히 우주활동에 있어서 국제조약상의 국제책임 및 분쟁 해결 그리고 우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문제들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주물체 발사기관 및 정부는 이에 따른 법적·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공군법무실, 「우주법 해설서」, 2008. 10.
- 김두환, “한국에 있어 우주법의 주요내용, 논평과 장래의 과제”,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4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9. 12.
- 김선이, “우주손해배상법에 관한 약간의 고찰”,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2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7. 12.
- 문준조·김선이, 「현대우주법론」, 한국법제연구원, 2009.
- 박원화, 「우주법」, 명지출판사, 2009.
- 신성환, “KSLV 발사에 따른 제작 및 제3자 피해 책임에 대한 우주법적 소고”,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1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6. 6.
- 이영진·김두환·조홍제, “우주법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방향 연구”, 외교통상부 용역과제, 2008. 9. 30.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08년 우주산업 실태조사」, 2008. 12.
- \_\_\_\_\_, 「우주법 및 비확산체제 관련 정책자료」, 2004. 5.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항공운송 및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 및 외국 입법례 분석과 우리

83) 이영진 외 2인, 전제 보고서 pp.152-153.

- 나라 법제의 개선과제”, 2007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2007. 10.  
홍순길·신흥균·김종복, 「신국제항공우주법」, 한국항공대학교 출판부, 2006.
- 李康斌, “宇宙産業の 危険管理と宇宙保険”, 「紀要」第2卷 第2号, 中央學院大學社會  
システム 研究所, 2002. 2.  
龍澤邦彦, 「宇宙法システム」, 中央學院大學地方自治研究センター-, 2000.  
栗林忠男, 「解説 宇宙法資料集」, 慶應通信, 1995.
- Cheng, Bin,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Clarendon Press Oxford, 1997.  
Diederiks-Verschoor, I. H. Ph. and Kopal, V., *An Indroduction to Space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Doo Hwan Kim, “The Main Contents, Comment and Future Task for the Space Laws in  
Korea”,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Vol.24 No.1, Korean Association of  
Air and Space Law, June 2009.  
Goh, Gerardine Meishan, *Dispute Settlement in International Space Law*, Martius Nijhoff  
Publishers, 2007.  
Haanapel, P.P.C., *The Law and Policy of Air Space and Ourter Space-A Comparative  
Approach*,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Jasentuliyana, Nandasiri, *International Space Law and the United Nation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International Bureau of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rbitration in Air, Space and  
Telecommunications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2.  
Lyll, Francis and Lasen, Paul. B., *Space Law A Treatise*,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9.  
Viikari, Lotta, *The Environmental Element in Space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8  
Won Hwa Park, “Outer Space Activities and Observation of Related Laws of Korea”,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Vol.24 No.2, Korean Association of Air and  
Space Law, December 2009.

<http://www.kari.re.kr>

<http://www.unoosa.org>

<http://www.jaxa.jp>

<http://www.nasa.gov>



## ABSTRACT

### The Liability for Damage an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the Space Law

Kang-Bin L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on the liability for the space damage and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with reference to the space activity under the international space treaty and national space law of Korea.

The United Nations has adopted five treaties relating to the space activity as follows: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the Rescue and Return Agreement of 1968,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the Registration Convention of 1974, and the Moon Treaty of 1979. All five treaties have come into force. Korea has ratified above four treaties except the Moon Treaty.

Korea has enacted three national legislations relating to space development as follows: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1987, Outer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2005,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regulates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national activities in outer space, the national tort liability for damage by space launching object, the national measures for dispute prevention and international consult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the joint resolution of practical questions by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regulates the absolute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faulty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person claiming for compensation, the claim method for compensation, the claim period of compensation, the claim for compensation and local remedy, the compensation amount for damage by a launching state, the establishment of the Claims Commission.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in Korea regulates the definition of space damage, the relation of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and the international treaty, the non-faulty liability for damage by a launching person, the concentration of liability and recourse by a launching person, the exclusion of applic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limit amount of the liability for damage by a launching

person, the cover of the liability insurance by a launching person, the measures and assistance by the government in case of occurring the space damage, the exercise period of the claim right of compensation for damage.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the problem in respect of the claimer of compensation for damage, the problem in respect of the efficiency of decision by the Claims Commission.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in Korea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the inclusion of indirect damage into the definition of space damage, the change of currency unit of the limit amount of liability for damage, the establishment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nd recourse right for damage by space joint launching person, the establishment of the Space Damage Compensation Review Commission.

The 1998 Final Draft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Related to Space Activities of 1998 by ILA regulates the binding procedure and non-binding settlement procedure for the disputes in respect of space activity.

The non-binding procedure regulates the negotiation or the peaceful means and compromise for dispute settlement. The binding procedure regulates the choice of a means among the following means: International Space Law Court if it will be established,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Arbitration Court.

The above final Draft Convention by ILA will be a model for the innovative development in respect of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with reference to space activity and will be useful for establishing the frame of practicable dispute settlement.

Korea has built the space center at Oinarodo, Goheung Province in June 2009. Korea has launched the first small launch vehicle KSLV-1 at the Naro Space Center in August 2009 and June 2010.

In Korea, it will be the possibility to be occurred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and dispute settlement, and the liability for space damage in the course of space activity.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and launching organization should make the legal and systematic policy to cope with such problems.

**Key Words:** Space Treaty, Space Liability Convention,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International liability, Dispute prevention, Liability for damage, Dispute settlement